

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난 피해현황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19조의3제1항).
-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인력·장비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19조의3제2항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 제19조의3의 “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”는 그 용어 정의 없이 재난 등의 용어와 혼재되어 있어 법 해석에 혼란을 주고 있고, 일반적으로 재해(災害)는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¹⁾를 의미하는데, 안 제19조의3제1항의 “재해 피해현황”이라는 문구는 재해의 개념에 비추어 동어반복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임.

이에 “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”의 개념을 “기상현상으로 인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²⁾의 재난”이라고 명확히 하였고,

1)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**재해**”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기본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.

2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**재난**”이란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
가. 자연재난: 태풍, 홍수, 호우(豪雨), 강풍, 풍랑, 해일(海溢), 대설, 한파, 낙뢰, 가뭄, 폭염, 지진, 황사(黃砂), 조류(藻

이를 “기상재난”으로 약칭하였음.

또한, 안 제19조의3제2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각종 재난 대응 및 복구 또는 기상재난 방지 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기상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같은 조 제3항은 기상재난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“기상재난 대응”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(주서본 참조).

개 정 안	수정의견
제19조의3(<u>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</u>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)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한 <u>재해</u> 에 대한 기관 간 연계 대응을 강화하고 생산된 예보 및 특보를 효과적으로 전달·통보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<u>재해 피해현황</u>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	제19조의3(<u>기상재난</u>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) ① ----- ----- 「 <u>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</u> 」 제3조제1호의 재난(이하 이 조에서 “기상재난”이라 한다)----- ----- ----- <u>기상재난 피해현황</u> ----- -----. -----.
② 기상청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종 재난의 대응 및 복구 또는 <u>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</u> 의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예보 및 특보의 제공과 설명 등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예보관 파견 등을 통해 인력을 지원하여	② ----- ----- ----- <u>기상재난</u> ----- ----- -----

類) 대발생, 조수(潮水), 화산활동, 「우주개발 진흥법」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·충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나. 사회재난: 화재·붕괴·폭발·교통사고(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)·화생방사고·환경오염사고·다중운집 인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또는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,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미세먼지, 「우주개발 진흥법」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·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

예보 및 특보의 제공과 설명 등을 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기술·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<u>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</u>	----- ----- --. ③ -----<u>기상재난의 방지 및 대응을</u>----- -----.
--	---

(전문위원 이 화 실)